
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(2020년 1월 1일 현재)

1. 계약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2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(보호자)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,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,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.
-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·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.
-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비용, 비급여 대상,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 시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.

3.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-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%(일반), 9%(감경), 6%(감경), 0%(기초)를 본인이 부담하고, 나머지 85%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.
-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(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.

[비용부담]

(단위 : 원)

장기요양등급	월 한도액	본인일부부담금			
		일반 (15%)	감경 (9%)	감경 (6%)	기초생활 수급권자
1등급	1,498,300	224,740	134,840	89,890	면 제
2등급	1,331,800	199,770	119,860	79,900	
3등급	1,276,300	191,440	114,860	75,570	
4등급	1,173,200	175,980	105,580	70,390	
5등급	1,007,200	151,080	90,640	60,430	

※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4. 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

1)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-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-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2) 수급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

3)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

5. 계약의 해제

수급자(보호자)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(사망) 서비스가 종결되며, 이용료(본인부담금)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6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
-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
-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“장기요양급여제공(이용)계약서”를 별도 작성 한다.

7. 서비스 종류

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방문요양 서비스(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)
- ② 방문목욕 서비스
-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·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
-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

8.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

- ① 방문요양 :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(식사하기, 화장실이용하기, 옷갈아입기, 머리감기 등) 및 가사활동,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방문목욕 :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.

[등급별 월 한도액]

(단위 : 원)

구 분	1 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월 한도액(원)	1,498,300	1,331,800	1,276,300	1,173,200	1,007,200

[방문요양]

(단위 : 원)

분 류	30분	60분	90분	120분	150분	180분	210분	240분
방문요양	14,530	22,310	29,920	37,780	42,930	47,460	51,630	55,490
본인부담금(15%)	2,170	3,340	4,480	5,660	6,430	7,110	7,740	8,320
본인부담금(9%)	1,300	2,000	2,690	3,400	3,860	4,270	4,640	4,990
본인부담금(6%)	870	1,330	1,790	2,260	2,570	2,840	3,090	3,320
본인부담금(0%)	0	0	0	0	0	0	0	0

※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(야간가산 20%, 심야 및 휴일가산 30%)

[방문목욕]

(단위 : 원)

분 류	차량이용(차량내 목욕)	차량이용(가정내 목욕)	차량미이용
방문목욕(60분이상)	74,470	67,150	41,930
본인부담금(15%)	11,170	10,070	6,280
본인부담금(9%)	6,700	6,040	3,770
본인부담금(6%)	4,460	4,020	2,510
본인부담금(0%)	0	0	0

9.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

-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.
-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-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10.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

-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.
-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